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9554(본소), 2022나5956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9554(본소), 2022나59561(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22771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박선우

변론 종결 2023. 4. 14.

판결 선고 2023. 5. 2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227716(본소),

2021가단21368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C, D, E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각 2/35 지분에 관하여 각 2001. 8.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2, 3,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1㎡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 원고는 피고 B, C, D, E에게 각 1,605,675원, 피고 F에게 688,146원, 피고 G, H에게 각 458,7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8,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2001. 8. 10."을 "2015. 10. 4."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납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302m² 중 건물 부분(별지 'ㄷ' 부분)은 71m²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건물 부분 중 콘크리트로 타설된 부분은 그 형상에 비추어 같은 시기에 타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수목을 심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2011. 12. 12.경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하여 침범지점에 붉은 스프레이로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 당시 원고가 위 침범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한 자료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중 돼지막사는 1976년에 신축되어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1976년부터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1981. 8.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제1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년도 1기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이 사건 토지상의 돼지막사(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축사)의 건축년도가 1976. 1. 1.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기과세내역서의 건축년도부터 실제 과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위 건축년도 기재만으로 위 건물이 실제 1976년경에 건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위 건물이 1976년경에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33㎡에 불과하여 적어도 1981. 8.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호

판사최지영

판사이재희

별지